

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4.

제 출 자 : 달 성 군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 한다.

2. 개정이유

- 읍면 재무업무 군이관 계획에 따라 읍면에 위임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군으로 이관코자 위임근거를 삭제하고,
- 건축법시행령 제1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업무중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,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근거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코자 함.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

4. 주요내용

- 별표의 회계과 소관 위임사무중 “군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”을 삭제
- 별표의 도시건축과 소관 위임사무중 건축신고 관련사항, 가설건축물, 옹벽 및 공작물,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의 위임근거법령을 “건축법 제9조, 제15조, 제69조, 제72조”에서 “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”으로 변경

5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중 회계과 및 도시건축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소관부서	일련 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
회 계 과	1	물품관리조례중 다음사항 가. 불용의 결정 나. 불용품 매각처분	· 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, 동조례시행규칙제6조제2호 · 동조례 제17조
도시건축과	1	도시계획법중 다음의 권한 가. 불법형질변경 등 위반행위 단속 및 조치	·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제133조
	2	개발제한구역내의 사항중 다음의 권한 가. 주택(부속건축물 포함)의 기준면 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㎡이하인 증·개축 및 대수선 나. 바닥면적의 합계가 85㎡이하의 주택증축(연면적 합계가 200㎡ 이하에 한한다) 다.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또는 공작 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㎡ 이하의 증축·개축 및 대수선 (관리용 건축물을 제외)	·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 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·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 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

소관부서	일련 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
도시건축과		<p>라. 축사, 버섯재배사, 온실 및 콩나물 재배사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㎡미만의 증축·개축 및 대수선과 농산물 저장창고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㎡미만인 증축·개축 및 대수선</p> <p>마. 죽목의 식재</p> <p>바. 균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(다만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제외)</p> <p>사. 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임시 가설 천막</p> <p>아. 물건의 적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15일이상 1월미만의 적치 - 중량 20톤이상 50톤이하이거나 부피가 20m³이상 50m³이하로서 제17조제1항 규정에서 열거한 종류의 물건의 15일이상의 적치 <p>자. 문화재의 조사·발굴을 위한 토지형질변경</p> <p>차.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·옹벽·사방시설 등의 설치</p> <p>카. 위법행위 단속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</p>	<p>·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</p> <p>·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제5조</p>

소관부서	일련 번호	위 임 사무명	근거 법령
도시건축과	3	<p>건축법중 다음의 권한</p> <p>가. 바닥면적의 합계가 85㎡이내의 증축</p> <p>나. 농·어업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건축 또는 대수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면적 합계가 100㎡(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330㎡) 이하인 주택 - 연면적 200㎡이하인 창고 - 연면적 400㎡이하인 축사, 작물 재배사 <p>다. 대수선</p> <p>라. 기타 소규모 건축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면적 합계가 100㎡(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330㎡) 이하 건축물 -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-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구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-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㎡이하의 공장 <p>마. 가설 건축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법 제15조,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대구광역시건축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	<p>•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</p> <p>•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</p>

소관부서	일련 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
	4	<p>바. 옹벽 및 공작물</p> <p>- 건축법 제72조, 동법시행령 제118조 및 대구광역시건축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</p> <p>사. 건축물 대장기재 신청</p> <p>아.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</p> <p>자.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</p> <p>차. 이행강제금</p> <p>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의 권한</p> <p>가. 읍자대상자 선정</p> <p>나. 자금회수</p> <p>다. 읍자 또는 보조받는자에 대한 지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건축법 제29조,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건축물관리 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 규칙 건축법제27조, 동법시행 규칙 제2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건축법 제9조, 동법시행령 제11조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【별표】

읍·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

현 행				개 정 안			
소관 부서	일련 번호	위임사무명	근거법령	소관 부서	일련 번호	위임사무명	근거법령
회계과	1	군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. 군유잡종재산의 대부 허가 및 사후관리 다만, 군·공유임야 대부(사용허가) 승낙·분수립 설정 및 사후관리 제외	· 지방재정법 제73조	-	-	가. <삭 제>	<삭 제>
	2	(생 략) 가 ~ 나. (생 략)				(현행과 같음)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	
도시 건축과	1~2	(생 략)		---	1~2	(현행과 같음)	
	3	건축법증 다음의 권한 가. 바닥면적의 합계가 85㎡이내의 증축 나. 농·어업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건축 또는 대수선 - 연면적 합계가 100㎡(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기목의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330㎡) 이하인 주택 - 연면적 200㎡이하인 창고 - 연면적 400㎡이하인 축사, 작물 재배사 다. 대수선 라. 기타 소규모 건축물	· 건축법 제9조 동법시 행령 제 11조			가. ----- 나. ----- 다. ----- 라. -----	· 지방자치법 제 95조 제1항

현 행				개 정 안			
소관 부서	일련 번호	위임사무명	근거법령	소관 부서	일련 번호	위임사무명	근거법령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면적 합계가 100㎡(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㎡) 이하 건축물 -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-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 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구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-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㎡이하의 공장 <p>마. 가설 건축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법 제15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대구광역시건축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<p>바. 용벽 및 공작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법 제72조, 동법시행령 제118조 및 대구광역시건축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<p>사~아. (생 략)</p> <p>자.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</p> <p>차. (생 략)</p> <p>4 (생 략)</p>			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축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 15조 및 대구 광역시건축조 례 제16조 <p>· 건축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 118조 및 대구 광역시건축조례 제44조</p> <p>· 건축법 제69조 제77조의2 내지 제83조</p>			<p>마. -----</p> <p>· 지방자치법 제 95조 제1항</p> <p>바. -----</p> <p>· 지방자치법 제 95조 제1항</p> <p>사~아. (현행과 같음)</p> <p>자. -----</p> <p>· 지방자치법 제 95조 제1항</p> <p>차.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</p>		
		4				4	